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공정보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투영된 佛 AFP의 투쟁사

공정보도를 향한 통신기자들의 열정과 투쟁은 비단 한국의 연합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세계적 통신사 AFP에서도 공정보도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과 개혁 노력이 지속됐다.

2010년 9월 29일 AFP통신 노조 중 하나인 SNJ-CGT는 “편집장의 상습적인 기사 잘라내기 행태를 고발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은 편파보도 강요도 비판했다.

유럽을 떠도는 유랑민들의 합법적인 프랑스내 근로행위를 인정하는 법 제정 관련 기사를 다른 기사와 묶어 단신처리한 것이나, 렌즈지역 본부에서 작성한 “내무부 조례, 유랑민(Rom)의 강제추방을 노린다”라는 기사를 3시간 15분이나 잡아놓고 늦게 내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랑민 추방과 관련한 내무부의 조례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큰 논쟁을 불러왔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실업률 관련 기사 송고를 둘러싸고 편집장과 다툼을 벌인 사회부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실업률 발표는 사회·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

이다. 또 2009년 9월 당시 사장이던 피에르루에뜨(Pierre Louette)가 추진한 회사에 대한 자본 투자 허용, 공영통신사 지위 변경,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편집국 직제 조정, 편집국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파업도 있었다.

2005년 10월에는 코르시카 바스티야에서 화가 난 시위대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경찰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AFP 본사 사진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위선’의 동의를 얻은 사진부장이 경찰에게 찍어 놓은 사진 전량을 시위대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 그것도 은밀히 전달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AFP는 사진기자와 정보원의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AFP 노조는 집단 항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FP의 불공정보도 대표사례에는 사르코지의 부인 카를라 브루니를 다룬 두 종류의 책에 대한 보도가 과도하게 나간 반면 리먼브라더스 사태 2주년을 맞이해 저명 사회학자인 모니크와 미셸 팽송이 공동저술한 책 『놀란 경제



학자들의 고함(Manifeste des economistes atterres)』은 일절 언급되지 않은 케이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내부의 건전한 목소리와 보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공정보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영화 또는 시장경쟁시스템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있어왔지만 프랑스는 AFP에 대해 국가의 직접 지원을 공식화하고 통신사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는 수많은 불공정 사례와 정치권의 개입 유혹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비판과 감시망을 통해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23년만에 파업에 들어간 연합뉴스

가 건강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금과옥조인 공정보도를 확립하는 길은 5년마다 바뀌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보다 잃어버렸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편향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마련하는 데서 공정보도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정보를 완전하고도 객관적인 형태로 찾아” 보도한다는 AFP 지위에 관련한 법령 1조 1항과 “AFP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외부의 영향과 의견을 배격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집단이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집단의 통제 아래에 놓일 수 없다”는 2조 1항이 눈에 띈다.

MB측근 천신일 기사 슬그머니 바뀌었다 금품 준 대상..천신일에 유리하게 변경



2010년 1월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생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를 함께 한 ‘6·3동지’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2007년 대선 때 자기 예금을 담보로 이 대통령이 특

별당비 30억원을 대출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측근으로 통한다.

이날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 부터 받은 돈 중 15만위안의 용처였다. 당시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은 대한레슬링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위해 사용했기

‘박원순-국가’ 명예훼손 판결기사 본말전도

연합뉴스가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과 국가가 명예훼손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본말이 전도된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 6월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고’ 국가는 “박 상임이사가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냐는 점이었다.

2010년 9월 1심 재판부의 결론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국가는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항상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므로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때 현저히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관련부처를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 당일 연합뉴스는 박 상임이사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으로 첫 기사를 송고하고 오후에는 판결문을 입수해 종합, 종합2보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제목과 리드가 부자연스러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데스크의 주문이 기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데스크 지시로 기사 방향 바뀌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종합기사의 제목은 『‘국가, 악의적 비판엔 명예훼손 가능’』이었다. 또 기사의 리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악의적인 비판이 가해졌을 경우 국가도 당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했다.



그러나 전체 판결문의 취지가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데 있음을 생각하면 왜 이런 형태로 보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기자가 국가의 원고 적격이 없다는 쪽으로 기사를 썼지만 데스크 과정에서 제목과 리드가 수정됐다는 증언도 있다.

또한 당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은 박 전 상임이사의 소송 ‘승패’ 여부에 한껏 모아져 있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종합기사가 나간 뒤 법원 기자실에서 “기사가 판결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는 타사 기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취재기자는 데스크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다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결국 종합2보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종합2보의 제목 역시 “국가, 예외적 경우만 명예훼손 소송 가능”이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쪽에 비중을 뒀다.

리드는 “국가는 항상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로 수정됐지만 판결문의 원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식의 보도행태는 연합뉴스가 정부 입장을 우호적으로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새겨볼 부분이다.

☞ 1면에 이어

때문에 ‘검은 돈’이 아니라 격려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회장이 법정에서 용처에 대해 논란을 빚을 만한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천 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올림픽에 참가한 레슬링 선수단의 식사비와 금일봉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서는 심판들에게 전달했다며 과거와 다른 진술을 했다.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심판을 매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천신일 “박연차 돈은 순수한 격려금”>이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베이징올림픽 당시 레슬링협회 심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상당수 언론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국제심판에 썼다”,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돈, 레슬링 심판에게 돌렸다”며 천 회장의 진술을 제목에 직접 거론한 것에 비해 소극적인 보도였다.

더욱이 연합뉴스는 종합 기사를 내보내면서 천 회장의 진술 자체를 바꿔버렸다.

첫 기사에서 “베이징올림픽 당시 레슬링협회 심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종합 기사에서 “베이징올림픽 당시 우리나라 레슬링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로 수정됐다.

문제는 현장 취재기자와 상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기사가 고쳐졌다는 점이다. 취재기자는 종합기사가 나간 뒤에야 수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백 번 양보해 천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수정했다고 보기에다 개운치 않다.

당시 한 언론은 천 회장이 “2008년 박 전 회장으로 부터 받은 중국돈 15만 위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레슬링 선수들 격려 비용이었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베이징 올림픽 국제심판들에게 건넸다”, “특급 심판은 직접 만났고, 아래 등급 심판은 협회 부회장이 만나 밥을 사기도 했다. 후진국 심판들에게 화장

실 등에서 만나 돈을 건네기도 했는데 이는 일종의 관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천 회장이 ‘심판’과 ‘감독·코치’를 구분하지 못해 법정에서 말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다.

천 회장의 발언이 국제스포츠계에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혹은 천 회장 측의 정정 요청을 수용해 기사를 수정했다고 해도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

천 회장의 법정 발언은 발언 그대로 소개한 뒤 천 회장이 해명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법정에서의 발언 자체를 바꾸는 것은 ‘팩트’의 왜곡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천 회장의 발언을 수정하면서까지 종합 기사를 내보낸 것은 자칫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의 관계를 의식해 스스로 저자세를 취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